

# M. G. Singer의 道德的 推理論\*

趙 成 玖

## I. 一般化原理

### 1. 一般化原理의 性格

“한 사람에게 옳은 것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비슷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옳다.” 이 原理를 Singer는 一般化原理(Generalization Principle)라고 부른다. 一般化原理는 Singer가 제시한 여러 道德原理들 중의 하나이며, 어떤 점에서 그것은 보다 복잡한 道德原理인 一般化論證(Generalization Argument)의 보조적인 原理이다. 그러나 一般化原理는 모든 진정한 道德判斷에 포함되어 道德的 推理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道德原理로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Singer, Generalization in Ethics p. 34)

Singer에 의하면 어떤 行爲가 옳은가 그를가하는 문제는 그것이 수행되는 환경 또는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것이 아니라면 어느 한 사람에게 옳을 수 없다는 주장은 “똑같거나 혹은 비슷한 환경에서”와 같은 제한조건이 암암리에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一般化原理는 “한사람에게 옳은 것은 똑같거나 비슷한 환경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옳다.”는 형식으로 표현된다.(G.E. pp. 13-14)

이 경우에 “환경”이라는 말은 약간 애매한 표현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 행위의 환경이 행위자와 어떤 관련이 없이 결정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사람과의 관련이 없이는 결정될 수 없다. 어떤 사람에게 옳은 것은 그의 外部的인 환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内面的인 특성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옳은 것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비슷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옳다”는 형식으로 一般化原理를 전술한 필요가 있다.(G.E.p. 15)

“어떤사람에 대하여 옳은”과 같은 표현도 애매하다. “어떤 것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옳다”는 표현은, 1) “그가 그것을 하는 것이 옳다”거나, 2) “그가 그런식으로 취급받는 것이 옳다”는 두가지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一般化原理의 전술형식은 결과적으로 다음의 두 명제를 수반한다 : 1) A가 어떤 식으로 행위하는 것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어떤 비슷한 사람이전 간에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 옳은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옳다 ; 2) A가 어떤 식으로 취급받는 것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어떤 비슷한 사람이전 간에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옳은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만 옳다.(G.E.p. 15)

\* 本 論文은 1978년 12월에 서울大學校 大學院 哲學科에서 발표된 것이다.

그런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관련된 사람들의 本性이나 환경이 비슷한지 어떤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Singer에 의하면 “비슷한 환경에 있는 비슷한 사람들”的 표현은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채워진다. 一般化原理는 그 자체 안에 비슷한 환경에 있는 비슷한 사람들을 결정할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 (G.E. p. 19) 어떤 사람들 또는 그들의 환경이 어떤 상황에서 비슷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어떤가, 즉 그들 사이의 類似點들이 상황 속에서 적절한가 어떤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Singer는 생각한다.

모든 類似한 경우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들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의 토대가 되는 理由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理由는 어떤 상황속에서 누구가 유사하고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한다. 그 理由가 적용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유사하다. (G.E. pp. 21~22)

## 2. 道德判斷과 一般化原理

一般化原理는 모든 진정한 道德判斷에 포함되거나 전제된다.<sup>1)</sup> 왜냐하면 그것은 “옳음”, “그름”, “해야함”과 같은 道德的 概念이 갖는 意味의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道德判斷의 支持理由를 제시하려고 할 때 전제되기 때문에 道德的 推理의 本質의 特성이다. (G. E. p. 34) 만약 一般化原理가 道德判斷의 支持理由를 제시하려고 할 때에 前提된다면, 道德判斷은 理由에 의해 지지될 수 없다는 情意主義 倫理說이나 主觀主義 倫理說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G.E. p. 35) 그들의 입장에 의하면 道德判斷은 어떠한 客觀的인 意味도 갖지 않는 것으로서 간주된다. 情意主義 倫理說에 의하면 道德判斷은 어떤 것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態度를 표명할 뿐이며, 主觀主義 倫理說에 의하면 道德判斷은 話者 또는 그밖의 어떤 사람이 어떤 態度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Singer에 의하면 진정한 道德判斷은 그것의 근거가 되는 理由와 암암리에 관련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一般化原理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X는 옳다”는 진술은, 그것을 지지해 주는 理由와 이처럼 암암리에 관련을 맺지 않으면 단지 主觀的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話者가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든가, 또는 시인한다거나 비난한다는 것을 제시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態度나 選好의 진술로서 해석 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判斷으로써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理由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이러한 형태의 진술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道德判斷이 아니다. 그것은 “옳음”, “그름”과 같은 용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言語的 표현으로는 道德判斷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話者の 감정이나 태도에 관한 진술일 뿐이다. 그러나 만약 判斷을 떠받드는

1) 道德判斷에는 여러가지 種類가 있겠으나 Singer가 염두에 두 道德判斷은 “어떤 종류의 행위가 옳다”와 같이 표현될 수 있는 行為에 관한 道德判斷이다. 따라서 動機나 人格에 관한 判斷이나, “어떤 것이 바람직스럽다”와 같이 표현될 수 있는 판단은 제외된다. (G.E. p. 35)

理由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 판단은 客觀的이다. 이 말은 그것이 必然的으로 옳다거나 아니면 合理的인 意味에서의 반박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理由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決定的인 理由(conclusive reason)나 妥當한 理由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진정한 理由이어야 하지만 判斷을 반대하는 보다 타당한 理由가 있을 수 있다. 判斷의 客觀性은 따라서 정도의 문제이다. (G.E. pp. 55~56)

道德判斷이 客觀的인 判斷이 될 수 없다는 情意主義 倫理說이나 主觀主義 倫理說의 입장은 그것이 理由에 의해 지지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道德判斷은 理由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다. “情意主義 倫理說이나 主觀主義 倫理說의 지지자들은 진정한 道德判斷을 分析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생하는 표현을 분석한 것이다.” (G.E. p. 60)

### 3. 道德的 推理와 一般化原理

道德判斷들이 함축하는 一般性의 特性이 갖는 중요성은 그것들이 어떻게 正當化되는가 하는 方式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중 하나는 類似性에의 호소(appeal to analogy)이다. (G. E. p. 39) 道德判斷들이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類似性을 들추어 냅으로써, 즉 關聯된(relevant) 모든 면에서 類似한 경우를 끌어들임으로써 그것을 지지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옳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와 같이) 類似性에 호소한다는 것은 道德判斷에 내재하는 一般化原理에 호소하는 것이다. (G.E. pp. 40~41)

類似性에의 호소는 道德判斷을 고려할 때 언제나 관련된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교적 힘이 약하다. 道德判斷을 떠받드는 理由에는 類似性에의 호소이외에 적어도 다섯가지가 있다. (G.E. pp. 41~43) 그런데 그러한 理由들에도 역시 一般化原理가 언제나前提된다.

우선 事實에의 호소를 들 수 있다. 예컨데 “너는 약속했다.” “너는 그에게 빚지고 있다”와 같은, 상황에 관한 특수한 사실적 진술을 理由로서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은 자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는 “사람은 자기 빚을 갚아야 한다”와 같은 道德律을 전제한다. 이 道德律에 의하여 事實과 그것이 관련되는 判斷사이에 연결이 맺어진다. 그 道德律이 어떤 것인가하는 것은 반드시 분명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것이건 간에 하나의 道德律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둘 사이에는 그러한 연결이 맺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事實은 道德律과 道德原理에 의해서만 道德과 관련을 맺는다. 두번째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와 같은 道德律에 직접 호소할 수 있다. 이 두가지 형태의 道德的 論證, 즉 事實에의 호소와 道德律에의 호소에는 모두 一般化原理가 전제된다. 만약 사람이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 한 경우에 관련된다면 그것은 비슷한 모든 경우에 관련된다. 똑같은 주장이 道德律에의 호소에도 적용된다; 만약 어떤 道德律에의 적용이 한 경우에 관련된다면 그것은 비슷한 모든 경우에 관련된다. 세번째로 어떤 行爲가 야기할 것

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결과 또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事實에의 호소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의 평가에 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어떤 행위의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한 경우에 관련된다면 그것은 비슷한 모든 경우에, 즉 그 행위가 똑같거나 비슷한 결과를 야기하는 모든 경우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一般化原理가 포함된다. 네번째로 一般化原理에 직접 호소할 수 있다. 이것은 類似性에의 호소의 일반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위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一般化論證에 호소할 수 있다. 이것 역시 一般化原理를 포함하여 이점은 다음에서 나루어질 것이다.

## II. 一般化論證

### 1. 一般化論證의 연역과 타당성

一般化論證의一般的形態는 다음과 같다: 만약 모든 사람이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지 못하다면 어떠한 사람도 X를 해서는 안된다. 이 一般化論證은 다음과 같이 연역된다 (G.E. pp. 63~68)

- (1) A가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 A는 X를 해서는 안된다. (Principle of Consequences: PC)
- (2) 모든 사람이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 모든 사람이 X를 해서는 안된다. (Generalized Principle of Consequences: GC)
- (3) 모든 사람이 X를 해서는 안된다면 어떠한 사람도 X를 해서는 안된다. (Generalization Principle: GP)
- (4) ∴ 모든 사람이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 어떠한 사람도 X를 해서는 안된다. (Generalization Argument: GA)<sup>2)</sup>

이 一般化論證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前提들이 모두 타당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이 연역되는 과정에서 論理的인 문제점을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 있는 一般化原理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한다.

Singer에 의하면 一般化原理는 모든 道德判斷에 전제될 뿐만 아니라 道德判斷의 支持理

2) PC: If the consequences of A's doing X would be undesirable, then A ought not to do X (G.E. p. 63)

GC: If the consequences of everyone's doing X would be undesirable, then not everyone ought to do X (G.E. p. 65)

GP: If not everyone ought to do X, then no one ought to do X (G.E. p. 66)

GA: If the consequences of everyone's doing X would be undesirable, then no one ought to do X (G.E. p. 66)

由를 제시하려고 할 때에 항상 전제되기 때문에 “道徳的 推理의 本質的 特性”이다. 이점은 이미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더 이상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G.E. pp. 34~35)

“모든 사람이 X를 해서는 안된다면 어떤 사람도 X를 해서는 안된다”는 一般化原理는 “약간”(some)으로부터 “모두”(all)로의 推論이라고 말할 수 있다. (G.E. p. 62) 전통적인 形式論理學의 規則에 따른다면 “약간”으로부터 “모두”로의 推論은 誤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약간”으로부터 “모두”로의 推論이 항상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어떤 형태의 진술에 엄매임으로써 갖게되는 선입견에 지나지 않는다. (G.E. p. 5) 위와 같은 Singer의 입장에 대해서 N.A. Dorman은 위의 추론이 타당한 것은 “해야함” 또는 “옳음”과 같은 價值概念의 의미로부터 추론하기 때문이요, “약간”으로부터 “모두”로의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Dorman에 의하면 “X는 어떤 사람에게 옳다”로부터 “X는 모든 사람에게 옳다”에로의 추론은 단지 “약간”으로부터 “모두”로의 추론이 아니라 “옳음”의 의미로부터의 추론이다.<sup>3)</sup> 어쨌든 간에 一般化原理가 모든 道徳的 狀況에서 타당하다는 Singer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이제 結果의 原理(Principle of Consequences)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기로 한다. 結果의 原理는 一般化原理와는 달리 모든 道徳的 推理의 前提條件은 아니지만, 結果에 관한 道徳的 推理의 必須의 前提條件이다. 道徳的 狀況에서, 어떤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또는 그 결과가 좋을 것인지 아니면 나쁠 것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結果의 原理를 前提한다. 그러나 모든 道徳的 推理가 결과에 관한 推理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類似性에 호소할 때에는 두 경우가 類似한가 어떤가를 문제삼을 뿐, 우리는 結果를 고려하지 않는다.<sup>4)</sup>

Singer에 의하면 結果의 原理에 의해 제한된 범위안에서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는 意見이 서로 충돌할 수 있지만 結果의 原理 그 자체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G.E. p. 64) 結果의 原理는 그 자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 바람직스럽고 바람직스럽지 못한가를 결정할 수는 없다. (G.E. p. 65) 結果의 原理는 一般化原理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原理(formal principle)이다. 따라서 그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결과들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결정할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한다. 結果의 原理 그 자체는 그 근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sup>5)</sup>

3) “The Refutation of the Generalization Argument” p. 150. Ethics Vol. LXXIV. 1964.

4) Generalization in Ethics, p. 64에서는 結果의 原理가 一般化原理와 같이 “모든 道徳的 推理의 必須의 前提條件”이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나중에 “오직 結果에 관한 道徳的 推理의 必須의 前提條件”이라는 의미로 修正되었다. (Singer, “Principle of Consequences Reconsidered,” Philosophical Studies 31, p. 393, 1977).

5) Singer, Ibid, p. 393.

그러면 형식적인 原理인 結果의 原理는 그 자체에 문제가 없는가? 結果의 原理는,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어떤 행위이건 간에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산출한다면 옳지 않다는 것을 진술한다. 우리는 행위를 할 경우에,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혹은 아니할 것인가의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결과가 모두 바람직 스럽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하여 結果의 原理를 보다 엄밀하게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A가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반면에 A가 X를 하지 않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A는 X를 해서는 안된다.<sup>6)</sup> 그러나 정작 A가 X를 하는 경우이거나 X를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어느 경우에건 그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경우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X를 하지 않는 결과가, 똑 같은 기준에 의해 측정되는 경우에 “X를 하는 결과보다 더 나쁘다면 X를 해야 한다.”<sup>7)</sup>

Singer의 結果의 原理는 公利의 원리(Principle of Utility)와 다르다. 公利의 原理는 “A가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 X를 해서는 않된다”는 結果의 原理와 “A가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러우면 X를 해야 한다”는 그 逆原理(Obverse Principle of Consequences)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Singer는 그 逆原理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公利의 原理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Singer는 “A가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러우면 X를 하는 것이 A의 의무다”라는 그 逆原理는 不道德한 행위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公利主義的 推理는 A가 稅金을 納付하지 않는 것이 納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善보다 더 많은 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稅金을 納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정당화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G.E. p. 195) 그러나 公利의 原理에 대한 Singer의 이와 같은 批判은 그의 結果의 原理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A가 稅金을 納付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일은 그 자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므로 結果의 原理에 의한다면 A가 稅金을 納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따라서 A는 稅金을 納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sup>8)</sup>

一般化論證의 두前提 가운데서 結果의 原理는 약간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토해야 할 문제는 一般化論證의 연역에 있어서 論理的인 誤謬를 包含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Singer에 의하면 GC는 PC의 一般化된 형태이다.(G.E. p. 65) 다시 말해서 GC는 PC의 진술에서 “A” 대신에 “모든 사람”이 대치된 형식이다. GA는 이 GC와 그리고 GP라는 두前提에 의해 연역된다.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은 우선 Singer가

6) Singer, Ibid., p. 396.

7) Singer, Ibid., p. 397.

8)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on the whole) 그렇다는 것이다.(G.E. p. 64) 따라서 行爲者에 미치는 결과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A가 納付할 稅金은 政府의 全體의 稅額에 미하여 極微한 반면에 A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한다면 A가 稅金을 納付하는 結果는 그 자체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이다.

의도한 바대로 (PC가 一般化된) GC와 그리고 GP로부터 一般化論證이 論理的으로妥當하게 연역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GC의 前件과 GA의 前件에서의 “모든 사람”은 總體的인 (collective) 意味로 쓰인다. (G.E. p. 66) 따라서 “모든 사람이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함께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GC의 後件인 “모든 사람이 X를 해서는 안된다”는 표현과 GP의 前件인 “모든 사람이 X를 해서는 안된다”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같을까? 만약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같다면 GA는 GC와 GP로부터 論理的으로 타당하게 연역될 수 있을 것이다.

GC가 GP로부터 타당하게 일반화되려면 “A”에 代置된 “모든 사람”이 GC의 前件과 後件에서 똑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Singer가 밝힌 바와 같이 GC의 前件에서의 “모든 사람”은 總體的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後件에서의 “모든 사람”도 總體的인 意味를 가져야 한다. 이제 PC로부터 타당하게 일반화된 GC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모든 사람이 다함께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 모든 사람이 다함께 X를 해서는 안된다. (GC')

그리고 “모든 사람이 X를 해서는 안된다면 어떠한 사람도 X를 해서는 안된다”는 GP는, 媒概念이 같은 의미를 갖도록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한다 :

모든 사람이 다함께 X를 해서는 안된다면 어떠한 사람도 X를 해서는 안된다. (GP')

그런데 이 GP'의 前件은 總體的인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GP의 前件이 원래 個別的인 (distributive)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媒concept은 서로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GC'와 GP'를 전제로 하여 연역된 GA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모든 사람이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 모든 사람이 X를 해서는 안된다”는 GC의 後件이 GP의 前件이 원래 갖는 個別的인 의미를 갖도록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사람이 다함께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 어떤 사람은 X를 해서는 안된다. (GC'')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GP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어떤 사람이 X를 해서는 안된다면 어떠한 사람도 X를 해서는 안된다. (GP'')

이 두 前提에 있어서 媒concept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GC''는 PC로부터 타당하게 일반화된 형태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GC''의 前件이 總體的인 의미를 갖는 반면에 그

後件은 個別의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GC''와 GP''로부터 연역된 GA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로써 우리는 Singer가 의도한 바대로의 GA의 연역은 論理的인 問題點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inger가 의도한 바에 따른다면 GA는 PC의 일반화된 형태 GC와 그리고 GP를前提로 하여 연역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역은 媒概念이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없거나, 아니면 PC의 일반화된 과정에서 문제점을 포함하기 때문에 論理的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이 연역된 GA 자체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論理的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탈출구가 있을 것도 같다. 그것은 PC로부터 GA의 연역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GC''로부터 직접 그것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만약 이 방법을 시도한다면, GC'' 자체가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다.<sup>9)</sup> 그러나 GC''의 정당화는 PC의 일반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Singer는 별도의 문제로 그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 2. 一般化論證이 적용될 수 없는 조건

“모든 사람이 식량생산에 종사한다면 인류는 아마도 추위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도 식량생산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이 論證은 一般化論證의 反證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反證은 다시금 “이떠한 사람도 식량생산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식량생산에 종사해야 한다”는 反證에 부딪친다. 그러나 一般化論證의 타당한 적용은 이러한 反證에 부딪칠 수 없다. “어떠한 사람도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결과 때문에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論證은 이런식으로 반박될 수 없다. (G.E. p.72)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위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동시에 어떠한 사람도 그런 식으로 행위하지 않는 결과가 또한 바람직스럽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一般化論證은 可逆的(invertible)이다. (G.E. p.72) 왜냐하면 前者는 그런 식으로 행위하는 것을 금하는 반면에 後者는 그런 식으로 행위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一般化論證이 어떤 행위에 대하여 타당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하여 非可逆의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X를 해서는 안된다”는 형식의 論證은 어떠한 사람도 X를 하지 않는 결과가 또한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이 아닐 때에만 타당하다.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制限條件을 종합해서 완전한 형태의 一般化論證의 형식을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K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어떤 환경에서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동시에 그 집단의 어떠한 구성원도(그러한 환경에서) X를 하지 않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집단의 어떠한 구

9) D. Braybrooke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Collective and Distributive Generalization in Ethics”, Analysis 23, pp. 45~48, Dec. 1962)

성원도 어떤 특별한 理由없이는(그러한 환경에서) X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一般化論證이 可逆의이며 따라서 타당하지 않은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왜 그것이 그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可逆의이며 따라서 타당하지 않는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들의 무엇이 그것들을 다른 종류의 행위들과 그렇게 명백하게 구별지워 주는가? 이것에 관한 설명은 그러한 행위들이 一般化論證의 적용에 있어서 기술되거나 이해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G.E. p.75)

一般化論證이 식료품 생산과 같은 행위에 관하여 可逆의인 理由는 “식료품 생산”이라는 기술이 道德的 目的을 위해서는 막연한(indeterminate) 진술이기 때문이다. 그 행위는 너무나 일반적인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것이 道德的으로 限定된(morally determinate)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식료품을 생산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문제는 그것의 환경에 좌우된다.(G.E. p.76) 사람은 여러 방식으로 여러 目的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가지 다른 조건밑에서 식료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이한 방식, 목적, 조건들은 각각 서로 다른 행위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것은 옳고 또 어떤 것은 그르며 또 어떤 것은 여전히 옳지도 그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 행위가 이처럼 한정되면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문제는 답변될 수 있으며 그리고 一般化論證이 그것에 적용될 수 있다.

一般化論證이 어떤 행위에 관하여 可逆의인 것은 그 행위가 기술되는 방식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경우에 있어서 행위들은 너무 일반적인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이제 一般化論證이 적용될 수 없는 다른 또 하나의 상황에 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만약 모든 有權者가 P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다면 그 결과는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도 P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는 특정한 사람과 관련되는 행위에 一般化論證이 적용되는 실례이다. 이처럼 특정화된 행위에 一般化論證이 적용되면 그것은 可復的(reiterable)이다. 만약 一般化論證이 위의 경우처럼 특정화된 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一般化論證의 어떠한 실례이건 간에 그것이 可復의이면 타당한 論證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可逆의이기 때문이다.(G.E. pp.80~83, 122) 만약 모든 有權者가 P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해서는 안된다면 똑같은 理由때문에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게도 투표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어떠한 정당의 후보자에게도 투표해서는 안된다는 結論이 나온다. 이것은 어떠한 有權者도 투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有權者가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결론과 모순된다. 따라서 이 一般化論證은 可逆의이다.

“모든 사람이 농부가 된다면 그 결과는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도 농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論證은 모든 농부들을 不道德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다. 그러나 可逆性이라는 概念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모든 농부들을 不道德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Singer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다(따라서 어떠한 사람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G.E. p. 121) 一般化論證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술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다. 만약 농부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원할 때는 언제나” 농부가 된다면 그 결과는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을 것이다. 可復的인 상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원할 때는 언제나” 특정한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다면 그 결과는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농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든가 또는 어떠한 사람도 특정한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결론이 귀결되지는 않는다.

### III. 道德律과 道德原理

道徳律은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행위가 옳다거나 옳지 않다는 것을 진술한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언제나 옳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이다. 어떤 종류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종류의 행위는 어떤 것이건 간에 반대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道徳律이 “일반적으로”라는 제한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충하는 요구나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상충하는 요구 및 의무의 존재는 분명한 道徳生活의 사실이다. 그것은 道徳的問題의 主要根源이기 때문에, 연역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것이다.(G.E. p. 103)

道徳律은 어떤 종류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옳다거나 또는 옳지 않다는 것을 진술한다. 그러므로 道徳律은 모든 환경에서 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道徳原理는 모든 환경에서 타당하며 어떠한例外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道徳原理는 道徳律과는 달리 모든 道徳的 상황에 관련된다. 예컨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道徳律은 거짓말이 관련되지 않는 상황과는 관련이 없지만 道徳原理는 모든 道徳的 狀況에 관련된다. 그리고 道徳律과는 달리 道徳原理는 모두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지만 서로 충돌하지는 않는다.(G.E. pp. 103~105)

道徳律에 대한 이해는 道徳原理를 그것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도 어느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道徳律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것의 토대가 되는 道徳原理, 즉 그것을 확립 혹은 정당화시켜 주는 理由를 알아야 한다. 道徳原理 가운데는 이미 자세히 살펴본 바 있는 一般化原理와 一般化論證 그리고 結果의 原理 이외에도 “不必要한 苦痛을 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옳지 않다”는 苦痛의 原理(Principle of Suffering), “道徳律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正當化原理(Principle of Justification)가 있다.(G.E. p. 105) 우리는 前者の 세 原理는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道徳原理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結果의 原理는 그 자체 무엇이 바람직스럽고 바람직스럽지 않은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밝힌 바 있다. 이것과 유사한 주장이 苦痛의 原理에도 적합하다. 苦痛의 原理도 그 자체로서는 어떤 행위에 의해 야기되는 苦痛이 필요한가 또는 불필요한가를 말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要素들에 의해 결정되며 상이한 조건에 따라 변한다. 또한 이 原理는 그 자체로서는 어떤 행위에 의해 야기되는 苦痛의 정도 또는 양을 결정하지 않는다. (G.E. p. 107)

만약 苦痛을 야기하는 행위가 다른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면, 즉 어떤 다른 道德律에 의해 요구된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苦痛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苦痛을 야기하는 행위의 정당화는 그 苦痛이 피할 수 없다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하다. (G.E. p. 108)

苦痛의 原理는 “다른 사람에게 苦痛을 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옳지 않다”는 道德律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相關的 道德原理라고 불린다. “도둑질은 일반적으로 옳지 않다”는 道德律은 그와 관련되는 道德原理 즉 “도둑질을 위한 도둑질은 언제나 옳지 않다”는 相關的 道德原理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살인이나 거짓말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금지하는 道德律들은 각각 이들과 직접 관련되는 道德原理들을 갖는다. 이와 같은 相關的 道德原理를 Singer는 특히 道德法(moral law)이라고 하여 그밖의 다른 道德原理들과 구별한다. (G.E. p. 110) 道德法은 어떤 종류의 행위는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例外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은 서로 충돌할 수 없다는 점에서 道德律과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道德的 狀況에서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道德原理들과 다르다.

正當化原理는 道德律을 어기는 행위는 어떤 것이건 간에 정당화가 요구된다는 것을 전술한다. 행위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그 행위가 어떤 道德律과 충돌하거나 혹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만한 어떤 다른 理由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G.E. p. 111)

그러나 어떤 행위가 정당화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거나 혹은 그것의 정당화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정당화를 문제 삼을 때 우리는 정당화를 요구하는 행위와,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당화될 수 있거나 옳다는 것이 證明될 수 있는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後者의 意味에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는 단순히 그것을 支持하는 理由가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정당화할 수 있지만, 정당화를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히 그것을 떠받드는 理由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화할 수 없으며 거기에는 그 理由가 反對理由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G.E. p. 112)

지금까지 우리는 道德律과 道德原理가 서로 구별된다는 Singer의 見解를 살펴 보았다. 그

런데 이와 같은 입장을 우리는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Singer는 道德律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반면에 道德原理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結果의 原理와 一般化論證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P가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結果의 原理에 의한다면 P는 X를 해서는 안되며, 一般化論證에 의한다면 P는 X를 해야 한다.

Singer에 의하면 이 경우에는 두가지 可能性이 있다: (1)모든 사람이 X를 하는 결과가 또한 바람직스럽지 못할 경우, (2)모든 사람이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 아닐 경우.(G.E. p. 105) 前者は 一般化論證이 可逆의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아무런 結論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結果의 原理에 따라야 하며 P는 X를 해서는 안된다는 結論이 나온다. 그리고 後者は P에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어떤 特徵이 있는 경우로서, 만약 “P와 비슷한 모든 사람”이 비슷한 환경에서 X를 하는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 P는 X를 해서는 안된다(G.E. pp. 105~106). 따라서 Singer에 의하면 두 道德原理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Singer는 論點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反論은 例外的인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았음에 반하여 그것에 대한 Singer의 答변은 例外的인 경우로 이루어진 것 같다.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 들어 보자. P가 稅金을 납부하면 그 결과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이다.<sup>(10)</sup> 따라서 P는 稅金을 납부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만약 모든 사람이 稅金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므로 P는 稅金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P는 납세하는 테 있어서 例外的인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 제기에 대한 Singer의 논의에 따른다면 P가 稅金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의 극빈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P는 납세하는 테 있어서 例外的인 사람이다. 이 P와 비슷한 모든 사람이 稅金을 납부하면 그 결과는 물론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例外的인 경우를 문제삼은 것은 아니다. 非納稅者 집단이 아닌 납세자 집단에 속하는 P가 結果의 原理를 따르는 경우에는 稅金을 납부해서는 안되며 一般化論證을 따르는 경우에는 稅金을 납부해야 된다는 모순된 結論을 얻는다는 것이다.

#### IV. 道德의 基礎

Singer가 지금까지 전개한 논의는 道德의 基礎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道德原理들의 合理性을 확립하는 것은 道德의 合理的 基礎(rational basis)를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G.E. p. 300)

그려면 道德原理들은 合理的 基礎를 갖는가? 道德律이 道德原理에 호소함으로써 確立·

10) 本考 p. 56 參照

正當化될 수 있고 그 둘이 行爲의 道德性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道德原理 자체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道德原理의 正當化는 두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어떤 原理를 道德原理로서 받아들이는 理由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다. 이 물음은 개별적인 道德原理를 타당한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理由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서 의미가 있는 물음이다. 이 물음은 Singer가 제시한 여러 道德原理들의 正當化로써 답변될 수 있거니와, 이것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正當化”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논증(demonstration)이나 혹은 어떤 自明한前提로부터의 연역이라기보다는 옹호(defense)라는 의미에서의 그것이다. (G.E. p. 336) 道德原理의 正當化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어느 道德原理이전 간에 도대체 道德原理라는 것을 나는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물음은 “왜 나는 道德的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물음으로서 의미가 없는 물음이다. (G.E. p. 335) “왜 나는 道德的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명이 道德的 회의론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Singer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물음의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왜 나는 道德的이어야 하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애매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물음이다. 그 물음은 道德的인 理由를 요구하는 경우와 打算的인 理由(prudential reason)를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sup>11)</sup> 前者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의 물음은 “내가 해야 할 것을 나는 왜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같다. 그런데 이 물음은 “내가 해야 한다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내가 왜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내가 왜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이러한 물음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이것이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하는 理由들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를 말해 보아라.”(G.E. p. 319)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理由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理由가 주어질 수 없다. 그러한 물음을 던지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道德的 理由를 받아들여야 할 道德的 理由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G.E. pp. 319, 335) 따라서 그 물음은 대답될 수 없는 물음이다. 道德的 思惟(moral considerations)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11) Singer는 그 물음을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고찰한다. 그 나머지 경우는 道德原理에 호소함으로써 대답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물음이다. “왜 나는 道德的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이 경우에 있어서 “왜 나는 내가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같다. 이 물음은 단순히 문제되는 道德律의 정당화를 요구하는 물음으로서, 이것은 道德原理에 호소함으로써 대답될 수 있다. (G.E. p. 323) 따라서 이 물음은 “타당한” 道德原理를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문제삼는 우리의 논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행위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행위해야 할 道德的 理由가 주어질 수 없다. (G.E. p. 320)

어떤 문제에 관해서건 간에 결코 어떠한 理由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理由를 제시함으로써 그를 설득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하나의 理由는 理性에의 호소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理由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非合理的일 수 있으며 非道德의일 수 있다. (G.E. p. 321)

우리의 물음에 대한 해명이 道德的 회의론(moral scepticism)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Singer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어서 그는 道德的 회의론에 대한 反論을 제기한다. 그의 논의 전개를 촘아 다음에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들이 道德的 문제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충돌한다는 사실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道德的 思惟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道德의 客觀性 또는 合理性에 의문을 던지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道德判斷이 主觀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모든 사실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할 수는 있지만 그 사실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道德判斷은 主觀的(혹은 情意的)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Singer에 의하면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그들의 의견이 그처럼 서로 같지 않을 때 그들의 어느 쪽도 非合理的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 점은 의견이 같지 않다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귀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G.E. p. 321)普遍的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道德判斷一般이 主觀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이 非道德의이라거나 非合理的이라면, 그리고 우리들 중의 어떠한 사람도 반드시 道德的으로 행위하거나 合理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면, 道德의 문제에 관한 의견의 충돌이 발생한다고 해서 놀랄만한 것은 못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문제에서 의견의 충돌을 발견할 수 있다. 論理나 經驗科學의 문제에 있어서는普遍的인 의견의 일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客觀的이지만, 道德이나 價值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主觀的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그것은世俗的인 無知의 소산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 경험적인 사실이 아니라 철학적인 독단(dogma)이기 때문이다. 道德에 있어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의 타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論理나 經驗科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G.E. p. 322) 우리는合理的인 의견충돌(reasonable disagreement)과 非合理的인 의견충돌(unreasonable disagreement)을 구별해야 한다. 그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의견의 충돌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야 한다. 의견의 충돌은 의견이 理由에 의해 지지 받을 수 있는 한에서合理的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非合理的이다. (G.E. p. 323)

道徳的 회의론에 대한 Singer의 反論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가하는 문제는 결론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리의 물음이 갖는 또 하나의 다른 의미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왜 나는 道徳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또 하나의 다른 의미에서는 打算的인 理由(prudential reason)을 요구하는 물음이다. 그것은 “내가 道徳의으로 해야 할 것을 打算的인 의미에서 볼 때 내가 해야 할 理由는 무엇인가?”라는 식의 물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물음은 또 내가 道徳의으로 해야 할 것을 打算的인 의미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내가 해야 할 理由를 묻는 경우와, “특수한 경우에서” 내가 해야 할 理由를 묻는 경우로 갈라 볼 수 있다. 前者와 같은 경우라면 그것은 打算性(prudence)과 道徳性(morality)이 일반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대답될 수 있다.

대체로 볼 때 “정직은 最上의 方策이다”(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러나 “이 경우에” 내가 해야 할 打算의 理由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 打算性과 道徳性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답할 수 있는 절이 없을지도 모른다. 정직이 반드시 最上의 方策인 것은 아니다; 부정직한 행위를 함으로써 自己利益을 취할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그밖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위하면 당신은 좋아하겠는가?” 이러한 반문이 효과적 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G.E. p. 324)

일반적으로 정직은 最上의 方策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정직해야 할 타당한 理由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道徳의인” 理由가 아니다. “하나의 方策으로서” 정직을 권하는 것은 그것을 道徳의인 근거에서 권하는 것이 아니라 打算의인 근거에서 권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단순히 最上의 方策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道徳律 또는 道徳原理에 따라 행위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완전한 의미에서 道徳의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옳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로우며 안전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렇게 행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G.E. p. 325)

## V. 批判的 結論

Singer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道徳의 推理는 道徳律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만약 道徳律이 정당화를 요구하는 경우나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道徳律이 없을 경우에는 道徳原理(특히 一般化論證)에 호소한다.(G.E. p. 134) 그러므로 道徳原理의 타당성은 모든 道徳의 推理의 타당성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Singer에 있어서 道徳의 推理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道徳原理는 結果의 原理와 一般化原理 그리고 그들로부터 연역되는 一般化論證인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이와 같은 道德原理들의 타당성을 재음미해 보기로 한다.

結果의 原理는,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不道德한 行위도 정당화해 줄 수도 있다.(本考 p. 56) 稅金을 납부하는 행위는 一般化論證에 따른다면 마땅히 해야 할 行위이지만, 結果의 原理에 따른다면 하지 않아도 될 行위이다. 結果의 原理가 不道德한 行위를 금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一般化論證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다. 一般化論證의 연역은 結果의 原理를 요구하지만 道德的 문제의 解決에 있어서는 結果의 原理보다 一般化論證에 더 우선을 두었다는 비판을 Singer는 면치 못할 것 같다.

結果의 原理는 또한,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行위를 하는 결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는 결과가 동시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 똑같은 기준에 의해 측정되는 경우에 그 行위를 하지 않는 결과가 그것을 하는 결과보다 더 나쁘다면 그 行위를 하도록 명령한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결과들을 똑같은 기준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어떤 行위를 하는 결과가 打算의 의미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반면에 그 行위를 하지 않는 결과는 道德의 의미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면 그 결과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Singer에 의하면 行위의 打算性은 行위자에게 미치는 결과에 좌우되며, 그것의 道德性은 他人에게 미치는 결과에 좌우된다.(G.E. p. 303) 行위자인 자기에게 미치는 결과와 他人에게 미치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打算性과 道德性은 서로 그 性格을 달리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一般化原理는 어떤가? 어떤 사람들이 그 본성과 환경에서 서로 비슷한가 어떤가를 결정하는 것이 물론 힘들기는 하지만, 一般化原理는 道德的 推理의 本質的 特性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

一般化論證은 結果의 原理와 一般化原理라는 두 道德原理로부터 연역된다. 그러나 그것의 연역은 논리적인 난점에 부딪쳐 타당성을 부여받기 힘들다고 보았다. 그러나 一般化論證 자체는 때로 많은 설득력을 갖는다. 특히 상호협력이 없이는 어떤 共同目的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一般化論證이 주로 이용되며 또한 효과적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行위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나? 그러므로 그렇게 行위해서는 안돼!” 이러한 論證에 대해,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行위하지는 않을테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반론을 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그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기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간과한다. 모든 사람이 각기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이 그렇게 行위할 것이다.

一般化論證이 다른 道德原理로부터의 연역을 통하여 정당화되기 힘들다면 그 자체로서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道徳原理들을 스스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내가 왜 그 道徳原理들을 받아들여

야 하는가?" 즉 "내가 왜 道德의이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Singer가 암시한 바와 같이 그 사람은 아마도 道德的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道德의 영역을 벗어난 사람이며, 道德哲學은 더 이상의 처방을 그에게 내려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물음에 대한 해명이 Singer가 의도한 바대로 道德的 회의론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을까? Singer는 合理的인 의견충돌과 非合理的인 의견충돌을 구별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合理的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道德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道德的 회의론은 非合理的인 의견충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Singer는 생각한다. 그러나 道德的 회의론은 사람이 合理的으로 살아간다고해도, 다시 말해서 "理性에 귀를 기울인다"(G.E. p. 320)고 해도 道德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한다. Singer에 의하면 道德判斷은 理由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한에서 그것은 객관적이다.(本稿 p.127) 그런데 그 道德原理는 形式的인 原理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形式的인 原理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 어떤 것이 바람직스럽거나 바람직스럽지 않은가를 말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바람직스럽거나 바람직스럽지 않은가를 결정할 기준이 따로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기준이 설정되고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 우리는 道德判斷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Singer는 道德 및 道德體系가 社會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道德原理가 相對의이라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道德體系들이 多樣하다는 것과 道德原理가 相對의일 수 없다는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은, 道德原理가 갖는 특성, 즉 그것은 그 자체 어떤것이 바람직스러운가를 결정해 줄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문제는 각 道德體系가 서로 충돌하여 양립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스럽거나 바람직스럽지 않은가를 결정해 줄 기준에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Singer는 그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

어떤 것이 바람직스럽거나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Singer의 道德的 推理가 때로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을 죽인다거나, 자기가 원할 때에는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면 그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Singer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지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G.E. p.95) 그러나 우리가 道德的 문제에 직면할 때 실제로는 어떤 것이 바람직스럽거나 바람직스럽지 않은가를 결정하기 힘들 때가 많다. 더군다가 어떤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거나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결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道德的 문제를 合理的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倫理學은 價值論一般에合理的的基礎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